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7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 박수현·한정애·조인철

양부남 • 조계원 • 윤후덕

박용갑 • 이건태 • 신영대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도 헌법에 근거하는 제도인 이상 그 행사에 법치주의, 법 앞에의 평등 등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할 헌법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연방헌법은 사면의 대상에서 탄핵된 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프랑스 사면법에서는 전범, 반인륜적범죄, 테러관련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면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면, 감형, 복권의 근거 및 절차만을 규정할뿐 사면권 행사 시의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들에 대한 사면의 제한 역시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등을 할 수 없 도록 하여, 사면권의 행사와 헌법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의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을 "복권(復權)의 실시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제한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사면, 감형 및 복권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 치주의·사법권의 독립 및 법 앞의 평등 등 헌법적 기본질서에 끼 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 니한다.

-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 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 2. 「헌법재판소법」 제4장제2절의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파면된 자
- 3.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나 이었던 자

4. 그 밖에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테러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면, 감형 및 복 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제1조(목적) ①
감형(減刑) 및 <u>복권(復權)에 관</u>	<u>복권(復權)의 실</u>
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제한
	<u>에 관하여</u>
<u><신 설></u>	② 대통령은 사면, 감형 및 복
	권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치주의·사법권의 독립
	및 법 앞의 평등 등 헌법적 기
	본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
	히 고려하여 이를 남용하지 아
	<u>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 <신 설></u>	제5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특
	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하지 아니한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
	<u>지른 자</u>
	2. 「헌법재판소법」 제4장제2
	절의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u>파면된 자</u>

- 3.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 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거나 이 었던 자
- 4. 그 밖에 전쟁범죄, 반인륜적범죄, 테러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